

외국인투자 관련 조세정책 동향

[2024년 상반기]

2024. 3.

본 자료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국내 조세정책·동향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며,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KOTRA 외투·국내복귀·인재유치 종합행정지원센터 종합상담실 국세청 파견관(02-3497-1059)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목 차

I . 2024년 상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	1
II . 2024년 핵심 추진과제	2
민생경제 지원분야	
1. 민생경제 회복에 온기를 더하는 따뜻한 세정 구현	3
2. 우리경제의 재도약에 힘이 되는 세정지원 확대	4
3. 세정현장과 직접 소통하여 납세자 문제를 즉시 해결	5
III . 2024년 조세분야 주요 변경내용	7
1.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시행	7
2.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	7
3.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확대	7
4.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	8
5. 법인세 최저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가산을 조정	8
6.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세제지원	8
7.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	9
8.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강화	9

I. 2024년 국세행정 여건 및 운영방향

1. 국세행정 여건

- (경제 전망) 수출 중심 경기 회복 기대되나, 대내외 불확실성 상존
- (민생 상황) 고물가·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서민생활 부담 여전
- (시장 여건) 기업투자·경영활동 위축으로 경제 활력 제고 노력 필요
- (구조 변화) 인구위기, 국가채무 증가 등 경제구조 변화 가속화

2.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향



II. 2024년 핵심 추진과제

민생경제 지원

- ◇ 민생경제 안정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여 영세납세자 세정지원 및 기업의 수출·투자 뒷받침 추진

1. 민생경제 회복에 온기를 더하는 따뜻한 세정 구현

가 중소기업 세정지원 확대 및 세무검증 부담 축소

- (세정지원 패키지)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게 세목별 납부기한 직권 연장, 압류·매각 유예 등을 한 번에 통합 제공
 -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(2개월) 대상은 법인세·소득세도 같이 직권 연장(3개월)하고,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·매각을 최대 1년 유예
- ※ 지원대상: ①부가세('24.1.) 128.0만 건, ②법인세('24.3.) 5.2만 건, ③소득세('24.5.) 66.7만 건

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

- ▶ (건설업·제조업) 고금리, 부동산경기 침체로 매출이 급감(최소 △30%)한 개인·법인사업자
- ▶ (음식업·소매업·숙박업)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개인사업자

- (환급금 조기지급) 영세사업자·수출기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·법인세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(법정기한보다 최장 20일 단축)
- ※ 지원대상(신고분): ①부가세('24.1.) 23.0만 건, ②법인세('24.3.) 1.7만 건

환급금 조기지급 대상

- ▶ (부가세) 매출액 1,500억 이하 중소기업(3년 이상 계속사업) 및 10억 이하 영세사업자 등
- ▶ (법인세) 수출 중소기업(수출 비중 50% 이상 등),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등

- (세무검증 완화) 일자리창출·수출·투자확대에 기여한 기업 중심으로 정기조사 선정, 신고내용 확인 등 검증 제외 대상* 추가 발굴 추진
- * (대상) 일자리창출기업, 수출 중소기업, 투자확대 기업, 혁신·스타트업, 사회적기업 등

-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**지역 투자확대** 기업의 검증제외 요건 **완화***
- * (기준) 전년대비 10~20% 이상 투자 확대 → (개선) 전년대비 **5~15%** 이상 투자 확대

나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촘촘한 복지세정 제공

- (장려금 지급) 자녀장려금제도 확대* 등 변경사항을 신청·심사시스템에 사전 반영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증가(+79만 가구 예상)에 차질 없이 대응
 - * (소득기준) 4천만 원 → **7천만 원** 이하, (최대지급액) 80만 원 → **100만 원**
- 장려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**사회초년생·고령층·노숙인** 등 취약계층 **맞춤형 안내** 및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**콜백***(call-back) 서비스 도입
 - * 상담량이 많아 즉시 상담이 어려운 경우 예약 번호를 남기면 당일 내에 상담원이 연락

취약계층 맞춤형 안내

- ▶ (초년생) 알바천국·잡코리아 등 구직사이트, 신병교육대(국방부), 대학 게시판(교육부)
- ▶ (고령층) 시니어클럽 회원, 노인일자리 참여자, 임대아파트 거주 노인 등
- ▶ (노숙인) 노숙인 관련 복지시설 현황 자료 수집·활용

- (환급금 찾아주기) 배달라이더, 대리운전기사, 간병인 등 **인적용역** 소득자에 대한 환급 신고 서비스의 **편의성*** 개선
 - * 여러 귀속연도를 각각 신고할 필요 없이 **클릭 한번으로 모두 신고**할 수 있는 기능 제공
- (물가안정 기여) 확대*되는 **기준판매비율**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수입산 대비 국산제품의 **세금 역차별문제**를 해소하고 소비자 가격 인하
 - * 시행품목:('23) 승용차, 가구, 모피, 소주 등 → ('24) **캠핑용 자동차, 청주·과실주** 등 발효주

- **기준판매비율**: 국산제품과 달리 수입산 제품의 세금부과 기준금액(과세표준)에는 판매이윤, 유통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는바 국산제품의 과세표준에서 일정 비율 차감

- (소득자료 공유) 실시간 소득과약제도가 국정과제 「**소득기반 고용보험**」 구축 등 다양한 복지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 **추가 제공*** 협의
 - * 교육부(사회위기 관리체계 구축), 보건복지부(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, 보험사무 간소화) 등

- (학자금상환 지원) 상환유예 제도를 동영상·모바일 알림 등 청년이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홍보하고, 교육부와 협업하여 연체가산금 인하 추진
* (기존) 납부기한 경과 후 매월 1.2% → (개선) 매월 0.5%

2. 우리경제의 재도약에 힘이 되는 세정지원 확대

가 역동적 경제성장을 위한 수출·투자 기업 지원

- (지원대상 확대)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「미래성장 세정지원*」 대상에 소재·부품·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 추가
* (자금유동성 지원) 납부기한 연장, 환급금 조기지급, 경정청구 우선처리 등 (23년 7.2조 원)
(경영 지원) R&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,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

「미래성장 세정지원」 대상 확대

기존 지원대상 (11.5만 개)		2024년 추가 (1.2만 개)
▶ 혁신성장·수출 중소기업 ▶ 신기술·신산업 중소기업 등	+	▶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: 원재료, 중간재, 생산설비 등 생산 ▶ 뿌리산업 분야 기업: 공정기술, 로봇·센서 등 기술 보유

- (전략적 세정외교) SGATAR 총회 개최 등 고위급 협력 강화로 우리 기업의 수출·투자 걸림돌 및 교민들의 세무 애로 신속* 해결
* 특히, 반도체·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해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우선 추진

■ SGATAR(Study Group on Asia-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): 아태 지역 세정협력 및 조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국세청장 회의로 제53차 총회가 '24.10월 한국 개최 예정

- (글로벌최저한세 대비)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하여 제도 최초 시행('24.1.1.)에 따른 우리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 해소 지원

■ 글로벌최저한세: 해외자회사 소재국에서 최저한세율(15%)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 시 모회사 소재국에 추가 과세권 부여 → '24년 우리나라·영국·프랑스·일본 등 50개국 시행

- (K-SUUL 수출지원) KOTRA, 해외 유통채인과 협업하여 중소

주류사가 해외소비자를 직접 공략할 수 있도록 수출채널 다변화

- * ('23) 하이트·롯데 등 대형주류사 수출망 활용 → ('24) 해외 현지매장 직접판매 추진
- 막걸리 첨가물 제한, 창고면적기준 완화, 주류운반스티커 부착의무 등 우리 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약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혁파

나 기업의 세무 위험을 해소하는 고품질 컨설팅 제공

- (가업승계 컨설팅)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명품 컨설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관리시스템 구축, 사후관리 강화 등 품질 향상 노력
 - ▶ (시스템) 대상자·상담여부 확인, 상담내용·진행상황 조회 등이 가능한 전산화면 개발
 - ▶ (사후관리) 사후관리기간 단축 등 개정사항, 대표이사 취임 등 공제요건 미충족 여부 안내
- (R&D 세액공제 사전심사) 우선 처리 대상을 확대*하고, 신속한 심사를 위해 정부지원과제 등 간편한 심사는 지방청 전담 처리
 - * (기존) 「미래성장 세정지원」 대상 → (추가) 벤처기업 인증, 신성장·원천기술 심사
- (법인세 공제·감면 컨설팅)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행 1년간의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, 업무 전과정(신청접수 → 검토 → 결과통지) 시스템화

3. 세정현장과 직접 소통하여 납세자 문제를 즉시 해결

- (찾아가는 세금상담) 창업지원센터·소상공인단체 등 세무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방문하여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를 적기에 발굴·해소

'23년 문제해결 사례 (적극행정 우수 수상)

- ▶ 아파트 분양업자(위탁자)의 세금 체납으로 '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'이 압류되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나, 개정세법* 분석 및 부동산 신탁회사(수탁자)에 대한 설득으로 체납액을 대신 징수하고 압류 해제하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
- * 종합부동산세법 §7의2 ('20.12.개정): 위탁자 재산으로 채권확보 곤란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 세금의 납부 의무 있음

- (민생·경제 소통) 민생현장·산업현장 방문, 경제단체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애로·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마련
- ※ '23년 국세청장 현장방문 : 공주산성시장, 남동산단, 중기중앙회 등 16회

'23년 주요 개선사례

구분	건의 내용	개선 현황
민생지원소통단	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대상 명확화 (서초세무서)	법령개정 완료
산업현장 방문	▸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·감가상각비 현실화 (시화산단)	법령개정 건의
경제단체 간담회	▸ 내국법인의 벤처펀드 투자양도차익 비과세 (중기중앙회)	법령개정 건의

※ 「2024년 상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」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 (www.nts.go.kr) > 보도자료('24.02.13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Ⅲ. 2024년 조세분야 주요 변경 내용

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

-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/주요 20개국(G20) 포괄적 이행체계*(IF)에서 합의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시행

* 포괄적 이행체계 (Inclusive Framework):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(BEPS)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(현재 145개국 참여)

- ▶ **(적용)**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.5억 유로(약 1조 원)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은 특정 국가에서 실효세율 기준 15%미만의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세액의 납부의무가 발생
- ▶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

나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

-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·법인세 감면제도를 신설하여 시행

- ▶ **(대상)**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(사업장 신설 포함)기업
- ▶ **(감면율)**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% + 이후 2년간 50% 법인세·소득세 감면
- ▶ **(감면한도)** 투자누계액 50% + 상시근로자수 × 1,500만 원 (청년·서비스업 2,000만 원)
- ▶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

다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

-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

- ▶ (감면율) 10년간 50%
- ▶ (적용기한) '23.12.31. → '28.12.31. (5년 연장)
- ▶ (적용대상) 유망 클러스터*내 학교에 임용된 교수 추가
* 연구개발특구, 첨단의료복합단지
- ▶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라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

○ 연결납세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이 확대

- ▶ (적용범위)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연결자법인의 범위가 현행 모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자법인에서 90퍼센트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으로 확대
- ▶ (시행일)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

마 법인세 최저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가산을 조정

○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이 조정

- ▶ (조정율) 2023년 법인세율 인하에 맞추어 배당가산율이 11%에서 10%로 조정
- ▶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

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도 벤처투자조합 출자와 동일한 세제지원

○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대해서도 현행 벤처투자조합 출자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적용

- ▶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를 통해 취득한 창업·벤처기업의 주식에 대해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과 출자금에 대한 10%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
- ▶ 양도차익 비과세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거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
- ▶ 소득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

사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

- 자원안보 강화 및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해외자원 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시행

▶ (공제대상)

- 광업권·조광권 취득 투자
- 광업권·조광권 취득을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
-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

▶ (공제율) 투자 또는 출자액의 3%

- ▶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투자 또는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

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강화

-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

▶ (세액감면 확대) 소득세·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(7 → 10년) 확대*

* (현 행) 5년 100% + 2년 50% → (개정안) 7년 100% + 3년 50% 감면

▶ (업종요건 완화) 해외진출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세제 지원 업종 요건 유연화*

* (현 행)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 동일

* (개정안) 「해외진출기업복귀법」상 전문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 시에도 인정

- ▶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

※ 「2024 조세분야 주요변경 내용」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누리집(www.moef.go.kr) < 2024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해당 법령을 실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의 확정 여부, 수정사항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작 성 자

- 종합상담실 국세청 파견관 한송이

KOTRA자료 24-048

외국인투자 관련 조세정책동향(24년 상반기)

발 행 인		유 정 열
발 행 처		KOTRA
발 행 일		2024년 3월
주 소		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(06792)
전 화		02-1600-7119(대표)
홈페이지		www.kotra.or.kr
문 의 처		종합상담실 (02-3497-1059)
I S S N		3022-8115



Copyright © 2024 by KOTRA. All rights reserved.
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.